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8. 22., 조승환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 8.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11. 19.)

상정, 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 21.)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승환 의원)

현재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 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청년에 대해서도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위기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 제정안들은 청년 계층 중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집단을 특화하여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그 지원 대상은 서영석의원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조승환의원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김성원의원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하는 8개 유형의 취약청년으로서 차이가 있음.
- 각 제정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아동·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의 절차적 어려움과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의 부족 등 극심한 생계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 또한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그 생애가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됨.
- 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 돌봄 및 생계부담을 안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재의 보

호체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족돌봄청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향후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유사한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고립·은둔청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제정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립·은둔청년을 정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인구구조상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그 준비에 집중해야 할 젊은 연령임에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채 공동체의 일원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고립·은둔 주요 이유는 취업실패,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문제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폭력이나 괴롭힘 및 다른 일 몰두 등의 사유도 적지 않았으며, 응답자들의 특성으로서 자신들이 심리상태가 좋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음.

□ 보건복지부는 좌절감에 빠져 고립 또는 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

이 처음부터 취업 연계 사업을 지원받기에는 정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생활의 회복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정시 기상, 식사 제때 챙기기, 타인과의 소통 등도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단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고, 가족 및 친구 등 심리적 지지 안전망을 만들며, 그 다음 타인과의 소통기술, 타인과 같이 생활하는 법, 타인과 일하는 법의 기초수준을 높이는 데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